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		•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 •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재경부
	보도일시	2007.3.28(수) 조간부터	
생 산 일	2007.3.27(화)	생산부서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담당과장	이경근(2150-9150)	담 당 자	김영노(2150-9151)

제목 : 06년 세법개정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우리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29일에 공포할 예정임

- 동 개정안은 '06년 세제개편에 따라 개정된 법인세법('06.12.30) 및 동법 시행령('07.2.2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간의 세제운용상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음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① 지정기부금 대상 확대

- 개인이나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10% (법인은 5%)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또는 손비인정이 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는 2가지 유형이 있는 바
 - 첫째 유형은 법인세법 시행령 또는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단체(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둘째 유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 공고하는 단체(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금번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시에는 다음과 같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추가하였음

- ① 「소방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 ②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한국항만연수원
- ③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 또한, 금년 '07.1/4분기에 신청받은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법인을 심사한 결과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등 39개 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로 추가지정 공고할 예정('07.3.30)

※ 첨부 : 추가지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 명단

○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특정 용도로 지출된 기부금으로 규정되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바

- 금번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시에는 다음과 같이 특정 용도로 지출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하였음

-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 ②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연계기업이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에 한함)에 지출하는 기부금
- ③ (사)한국농업씨시오연합회에 농업경영체의 교육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④ 순직소방관 유족 지원과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을 위하여 대한소방공제회에 출연하는 기부금

② 비영리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대상의 범위 확대

○ 현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음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같이 법인세를 과세하되 당해 수익사업소득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감안하여 일정 한도내에서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임

- 금번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대상을 모든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정보 시스템 설비의 취득까지 확대함으로써 의료업에 대한 재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였음

현 행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비영리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사용대상의 범위</p> <p>①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p> <p>②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기기(취득가액 100만원 이상에 한함)</p> <p>③ 초음파영상기·자기공명영상기·양전자단층촬영기</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① (좌 동)</p> <p>② + ③ : 모든 의료기기로 범위 확대 (예: 환자용침상, 휠체어, 자외선 소독기 등 추가)</p> <p>④ 보건의료정보시스템설비 추가(예: 처방전달시스템, 전자 의무기록시스템 등 추가)</p>

- ※ 첨부 : 1. 문답자료
2. 지정기부금 단체 명단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첨부 1> 문답자료

1. 공익성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

□ 기부금에 대한 세법상 처리

- 기부금이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접대비등 항목으로 비용처리

- 공익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손비인정(법인) 또는 소득공제(개인)를 허용하고 있음

□ 기부금의 종류 및 손금산입 한도

- 기부금 용도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특례기부금 3종류로 구분하고 과도한 사외유출방지를 위해 손금산입한도를 규정

<기부금 제도 현황>

종 류	대 상	손금범위	
		개 인	법 인
법정기부금	· 국가·지자체등 · 사립학교 시설비등	100%	75% (‘09년이후 50%)
특례기부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100%	50%
	· 국·공립대 병원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	50%
	· 특정연구기관등	50%	
지정기부금	· 학술·장학·문화·종교 등 공익성단체	10%	5%

□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단체

- 지정기부금단체에는 2가지 유형이 있는 바, ①**법인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열거됨**으로써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단체*와 ②**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 공고**함에 따라 인정되는 단체**가 있음

* 예시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 지정요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 ①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 ②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 특정용도에 지출된 지정기부금

- 법인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특정용도를 위해 지출되는 기부금으로 열거됨으로써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됨

* 예시

-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개념

-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됨을 감안하여 일정한도내에서 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비영리법인	손금한도
① 일반 비영리법인	○ 이자·배당소득 : 100% ○ 그 밖의 수익사업소득 : 50%
② 대학·대학병원·사회복지법인·도서관·박물관·미술관	○ 모든 수익사업소득 : 1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의무

-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분은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과세하고 있음

※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설비

: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예: 처방전달시스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검사정보시스템, 방사선 정보시스템, 의료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등)

* 보건의료정보: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식 또는 부호·수자·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6호)

<첨부 2> 지정기부금 단체 명단 (2007.1/4분기 신규지정)

번호	법 인 명	주무관청	지정분류
1	(사)효행봉사단	서울시	사회복지
2	(사)해외입양인연대	외교통상부	자선
3	(재)순환기연구재단	부산시	학술
4	(사)사.나.섬.세	대전시	사회복지
5	(사)제주어민회	제주시	문화
6	(사)청년의뜰	서울시	문화
7	(사)나빌레라	대전시	문화
8	(사)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건설교통부	학술
9	(사)인천내일을여는집	인천시	사회복지
10	(사)양지뜸	법무부	복지·자선
11	(사)우리문화예술진흥회	서울시	문화
12	(사)한국해양구조단	해양경찰청	자선·문화
13	(사)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학술
14	(사)청소년과더불어함께나눔	전라북도	사회복지·학술
15	(사)해병대전우회안전봉사문화단체	소방방재청	문화
16	(사)2008년F.I.C.C.가평세계캠핑 캐라바닝대회조직위원회	경기도	문화
17	(사)한국문화체육협회	서울시	문화
18	(사)한국대학생활체육연맹	서울시	문화·학술
19	(재)한국투자자교육재단	금융감독위원회	학술

20	(사)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복지·학술
21	(사)한국유소년축구교육원	서울시	문화·학술
22	(사)대전광역시개발위원회	대전시	복지
23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문화관광부	복지·문화
24	(사)산학연포럼	과학기술부	학술
25	(사)사랑의전인치유센터	서울시	복지
26	(사)섬기는 사람들	경기도	복지
27	(사)부산광역시한마음장애인후원회	부산시	복지
28	(재)양현	해양수산부	학술·복지
29	(사)순천문화예술발전후원회	전라남도	예술·문화
30	(사)대한민국무술총연합회	서울시	문화
31	(사)아시아재단우호협회	외교통상부	문화·학술
32	(사)아시아과학인재포럼	과학기술부	학술
33	(사)한국교육연구협의회	부산시	학술·문화
34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전라남도	학술
35	(사)대한바둑협회	서울시	문화
36	(재)행복나눔재단	노동부	복지
37	(재)유엔더블유티오스텝파운데이션	문화관광부	문화
38	(재)한화문화재단	서울시	문화
39	(사)미래준비	서울교육청	학술